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21호 2023. 5. 24.(수)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165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166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1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3-168호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3-169호	광양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8
광양시 고시 제2023-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3-29호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11
광양시 공고 제2023-1176호	광양시 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
광양시 공고 제2023-1177호	광양시 사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8

회										
람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 2713)

광양시 고시 제2023 - 165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성황동 348-1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가. 공원의 위치 : 광양시 성황동 348-1 일원

나. 공원의 규모 : 526,929.7㎡

다. 성황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성황공원	근린공원	성황동 348-1번지 일원	526,929.7	-	526,929.7	1991. 10. 12.	

라. 공원조성계획(공원 제17호)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면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26,929.7	-	526,929.7					· 시설률 :32.5%
시설면적 소계	168,556	증)2,564	171,120					
도로 및 광장	104,528	증)1,388	27,452					
조경시설	-	증)786	1,190					
휴양시설	3,616	증)184	6,812					
교양시설	559	-	10,120					
유희시설	3,798	증)206	12,136					
운동시설	24,235	-	623					
편익시설	31,820	-	6,607					
공원관리 시설	-	-	700					
녹 지	358,373.7	감)2,564	355,809.7					

마.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성황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신설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면적 : 증) 1,388㎡ - 조경시설면적 : 증) 786㎡ - 휴양시설면적 : 증) 184㎡ - 유희시설면적 : 증) 206㎡ 녹지면적 변경 : 감) 2,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황근린공원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특화된 근린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코자 함.

바.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4.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1길 50 (태인동)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5.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42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1길 50 (태인동)	20230524	20130415	마을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60-8	전라남도 광양시 영수길 79 (광영동)	20230524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유실수 재배지 조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인가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당초	광양	봉강	구서	산100-2	임	4,950	45,000	2022.6.3.~ 2023.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3*-*	이*균
변경	광양	봉강	구서	산100-2	임	4,950	155,000	2022.6.3.~ 2023.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3*-*	이*균

광양시 고시 제2023 - 168호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광양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일

광 양 시 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붙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로 한다.

읍면동	당초	변경	읍면동	당초	변경
광양읍	우산리 전지역	변동없음	옥곡면	원월리 일원	변동없음
	구산리 전지역	변동없음		묵백리 일원	변동없음
	칠성리 전지역	변동없음		신금리 일원	변동없음
	읍내리 전지역	변동없음		장동리 일원	변동없음
	목성리 전지역	변동없음	진상면	금이리 일원	변동없음
	초남리 전지역	변동없음		섬거리 일원	변동없음
	익신리 전지역	변동없음	진월면	망덕리 일원	변동없음
	사곡리 일원	변동없음		선소리 일원	변동없음
	죽림리 일원	변동없음			신아리 일원(신규)
	용강리 전지역	변동없음	골약동	황금동 전지역	변동없음
	인서리 전지역	변동없음		황길동 전지역	변동없음
	도월리 전지역	변동없음		도이동 전지역	변동없음
	세풍리 전지역	변동없음		성황동 전지역	변동없음
	덕례리 전지역	변동없음		중군동 전지역	변동없음
봉강면	석사리 일원	변동없음		중마동	중동 전지역
	지곡리 일원	변동없음	마동 전지역		변동없음
옥룡면	산남리 일원	변동없음	광영동	광영동 전지역	변동없음
	운곡리 일원	변동없음	태인동	태인동 전지역	변동없음
		율천리 일원(신규)	금호동	금호동 전지역	변동없음

광양시 고시 제 2023-169호

광양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4.

광 양 시 장

1. 고시일: 2023. 5. 24.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중속도로) 변경(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함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변경 조사

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기초 번호	길이 (m)	도로 위계	폭(m)	기초간격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 구역
1	변경전	목길 (1차종속)	다압면 도사리 1426	다압면 도사리 272	11-1 ~ 11-58	289	길	4	10	도면 참조	종점 구간 변경	다압면
	변경후		다압면 도사리 1426	다압면 도사리 224	11-1 ~ 11-60	305	길	4	10	도면 참조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고시 제2023-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성명	(주)전남도시가스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목성리 167-1
	면적	2.44㎡(영구) 4㎡(일시)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도시가스배관 영구점용 및 직류전류차단장치 설치공사
점용기간		2023. 5. 23. ~ 6. 15.(일시) 2023. 5. 23. ~ 2027. 12. 31.(영구)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폐지이유

- 통합 조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3. ~ 6. 1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1일까지 광양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¹²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kmj1220@korea.kr

2) 주 소: [57785] 광양시 시청로 33 여성가족과(중동)

3) 팩 스: 061-797-4174

라. 문의처 :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342)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대상)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04.08 조례 제778호

(일부개정) 2017.07.28 조례 제1522호

(일부개정) 2020.11.11 조례 제1766호 다른 조례의 개정(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건강가정센터의 명칭은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시장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근종사자를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 2인 이상을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로 두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위탁 운영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되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요청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센터장이 소속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⑥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⑦ 종사자 자격기준 및 임면과 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7.28.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 ⑤⑧ (생략)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광 양 시 장

1. 규 칙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창달로 우리 시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 근무일수 “3일”을 “4일”로 개정(제8조제1항)
- [별표2] 월액급여 인상(제5조제1항 제1호)
- [별표3] 공연수당 인상(제5조제1항 제3호)
- [별표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근무일 변경(제5조제1항 제2호)
- [별표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신설(제5조제1항 제7호 신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5. 23. ~ 5. 25.(3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문화예술과
(전화: 061-797-2715, FAX: 061-797-4184, 전자우편: khr1549@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제8조제1항 중 “3일”을 “4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달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액급여

(단위: 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반 주 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914,000
	단 무 장	1,724,000
	반 주 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악 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별표3]

공연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시립합창단	지휘자	550,000	300,000
	단무장	350,000	200,000
	반주자	300,000	170,000
	악보기획담당	300,000	170,000
	단원	200,000	15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550,000	300,000
	단무장	350,000	200,000
	반주자	300,000	170,000
	성악지도담당	300,000	170,000
	단원	50,000	30,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550,000	300,000
	단무장	350,000	200,000
	악장	300,000	170,000
	연희악장	300,000	170,000
	악기기획담당	300,000	170,000
	단원	200,000	150,000

[별표 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수당	비고
100,000원 × 2회(상·하반기)	※ 일반단원에 한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8조(근무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월액급여</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직 책</th> <th style="width: 65%;">월액급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87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보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091,0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시립소년소녀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15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악지도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립국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87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희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기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091,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반 주 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 휘 자	2,158,000	단 무 장	1,293,000	반 주 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악 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p>제5조(실비보상)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시간) ① ----- ----- 4일 -----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월액급여</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직 책</th> <th style="width: 65%;">월액급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3,83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보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455,0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시립소년소녀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91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주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악지도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립국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휘 자</td> <td style="text-align: right;">3,83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무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희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기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455,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반 주 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 휘 자	2,914,000	단 무 장	1,724,000	반 주 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악 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반 주 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 휘 자	2,158,000																																																																							
	단 무 장	1,293,000																																																																							
	반 주 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악 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반 주 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 휘 자	2,914,000																																																																							
	단 무 장	1,724,000																																																																							
	반 주 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악 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공연수당 (단위 : 원)				[별표 3] 공연수당 (단위 : 원)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정기공연	수시공연
시립 합창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시립 합창단	지 휘 자	<u>550,000</u>	<u>300,000</u>
	단 무 장	300,000	150,000		단 무 장	<u>350,000</u>	<u>200,000</u>
	반 주 자	250,000	120,000		반 주 자	<u>300,000</u>	<u>170,000</u>
	악보기획담당	250,000	120,000		악보기획담당	<u>300,000</u>	<u>170,000</u>
	단 원	150,000	100,000		단 원	<u>200,000</u>	<u>150,000</u>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u>550,000</u>	<u>300,000</u>
	단 무 장	300,000	150,000		단 무 장	<u>350,000</u>	<u>200,000</u>
	반 주 자	250,000	120,000		반 주 자	<u>300,000</u>	<u>170,000</u>
	성악지도담당	250,000	120,000		성악지도담당	<u>300,000</u>	<u>170,000</u>
	단 원	30,000	10,000		단 원	<u>50,000</u>	<u>30,000</u>
시립 국악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시립 국악단	지 휘 자	<u>550,000</u>	<u>300,000</u>
	단 무 장	300,000	150,000		단 무 장	<u>350,000</u>	<u>200,000</u>
	악 장	250,000	120,000		악 장	<u>300,000</u>	<u>170,000</u>
	연희악장	250,000	120,000		연희악장	<u>300,000</u>	<u>170,000</u>
	악기기획담당	250,000	120,000		악기기획담당	<u>300,000</u>	<u>170,000</u>
	단 원	150,000	100,000		단 원	<u>200,000</u>	<u>150,000</u>

현행	개정안												
<p>[별표 3의2]</p> <p><u>지휘자 연습지도수당</u></p> <table border="1" data-bbox="193 519 783 745"> <thead> <tr> <th>수당</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0,000원 × 근무일(최대 12일)</td> <td>※ 월액급여 및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td> </tr> </tbody> </table> <p><신 설></p>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2일)	※ 월액급여 및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p>[별표 3의2]</p> <p><u>지휘자 연습지도수당</u></p> <table border="1" data-bbox="810 519 1401 745"> <thead> <tr> <th>수당</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td> <td>※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td> </tr> </tbody> </table> <p>[별표 8]</p> <p><u>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u></p> <table border="1" data-bbox="810 1093 1401 1319"> <thead> <tr> <th>수당</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0,000원 × 2회 (상·하반기)</td> <td>※ 일반단원에 한함</td> </tr> </tbody> </table>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수당	비고	100,000원 × 2회 (상·하반기)	※ 일반단원에 한함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2일)	※ 월액급여 및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수당	비고												
100,000원 × 2회 (상·하반기)	※ 일반단원에 한함												

광양시 공고 제2023-1177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광 양 시 장

1. 규 칙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2. 개정 이유

-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창달로 우리 시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 연가일수 변경(제5조제1항)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5. 23. ~ 5. 25.(3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문화예술과
(전화: 061-797-2715, FAX: 061-797-4184, 전자우편: khr1549@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2년 미만 : 3일
2. 재직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 : 4일
3. 재직기간 4년 이상 6년 미만 : 5일
4. 재직기간 6년 이상 : 6일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 √ √ √ √ √ √ √ 행	개 √ √ √ 정 √ √ √ 안
<p>제5조(연가) ① 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연가를 허가하며, 연가일수는 연 3일로 한다.</u></p>	<p>제5조(연가) ① <u>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직기간 2년 미만 : 3일</u> 2. <u>재직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 : 4일</u> 3. <u>재직기간 4년 이상 6년 미만 : 5일</u> 4. <u>재직기간 6년 이상 : 6일</u>